힐스테이트 황금역 리저브 1단지 오피스텔 분양광고

HILLSTATE

현대건설

※ 본 오피스텔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관람 인원 제한 등으로 보다 상세한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담전화(☎ 053-763-6111)을 운영할 계획이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 상담 신청으로 인하여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상담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관련 사항에 대해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과 관련된 전화 상담은 청약 신청 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시 분양광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물은 주거복합단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의 시설이 복합되어 시공되며, 본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4호 "업무시설"에 해당합니다.
■ 본 오피스텔은 2021.01.01. 시행된「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오니, 본 분양광고를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자 만 나이 요건 기준일은 최초 분양광고일(2024.05.01.)입니다.
■ 청약자격 : 본 오피스텔은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위반행위 관련 계약취소 및 벌칙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거나 전매제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특히 전매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잔여호실 공급 : 정당계약 이후 미계약 잔여호실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2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20.2.21부터 적용)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함.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분양광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은 아파트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므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인터넷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및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건축과 – 21187호(2024.05.01.) 분양신고 수리
■ 본 건축물은 수성구청(2019-건축과-신축허가-219)을 통해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임
■ 공급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891-1번지 일원
■ 공급대상물 (금번 분양신고는 오피스텔만 해당)
- 대지면적 : 2,873.30㎡ 중 오피스텔 491.4410㎡
- 건축물연면적 : 33,234.7617㎡ 중 오피스텔 6,096.6394㎡
- 건축물층별용도
지하2층 :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오피스텔 주차장, / 지하1층 : 오피스텔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 지상1층 : 경비실, 방재실, 근린생활시설 / 지상2~6층 : 공동주택 주차장
지상7층 : 관리사무소, 입주민회의실, 제연실 등 / 지상8~22층 : 오피스텔 / 지상23층 피난안전구역 /
지상24~38층 : 공동주택 (공급대상물은 오피스텔이며,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은 본 분양신고의 공급대상물이 아님)

■ 공급규모 : 지하2층~지상22층 1개동 오피스텔 총 30실(아파트 152세대, 근린생활시설)
■ 주차대수 : 총 240대 중 오피스텔 39대
■ 분양대금 관리자와 분양사업자 간의 관계 :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분양하는 사업으로 분양대금 관리자와 분양사업자가 교보자산신탁㈜로 동일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 지구 및 용도구역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있지 않음.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 :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정되어 있지 않음.
■ 입주예정일 : 2024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준공 및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단축(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전염병 발생, 정부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내진설계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성능을 확보하였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Ⅶ-0.233g입니다.

■ 공급대상 (단위 : ㎡, 호실)

타입	호실수	실별면적(㎡)						실별 대지지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코아, 외벽 등)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주차장면적	계약면적	
890A	15	89.3893	38.8410	128.2303	11.6713	63.4435	203.3451	16.3879
890B	15	89.3173	38.7257	128.0430	11.6619	63.3924	203.0973	16.3747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실, 원)

타입	공급 호실수	동별 안내	층별	해당 호실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차 계약시	2차 계약후 30일이내	입주 지정기간
890A	15	102동 2호	8~14층	7	309,327,000	262,430,000	26,243,000	598,000,000	10,000,000	49,800,000	538,200,000
			15~22층	8	313,971,000	266,390,000	26,639,000	607,000,000	10,000,000	50,700,000	546,300,000
890B	15	102동 1호	8~14층	7	309,327,000	262,430,000	26,243,000	598,000,000	10,000,000	49,800,000	538,200,000
			15~22층	8	313,971,000	266,390,000	26,639,000	607,000,000	10,000,000	50,700,000	546,300,000

■ 공통사항
- 전용면적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상기 실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관리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발코니에 해당하는 서비스면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기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합니다.
- 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법정 표시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면적(㎡) × 0.3025 또는 면적(㎡) ÷ 3.3058)
- 상기 공급금액은 타입, 층, 향, 일조권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인지세, 취득세,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납부기한 내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50%씩 균등 납부)
- 1차 계약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체결 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 후 30일이내 2차 계약금을 호실별 계약서에 명시된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잔금 중 50%는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잔금은 사용승인일 이후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15일 이후에는 미납한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대지지분은 용도별,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지지분에는 전체사업부지 내 공개공지면적에 해당하는 지분이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대지를 지분별 구획 및 분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별 인테리어 공사는 입주 지정개시일 이후 잔금 완납 후 가능합니다.
- 이 광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II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청약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분양광고일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 단,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과 법인은 잔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거주지역 및 청약 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및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오피스텔은 홈페이지(https://www.hillstate.co.kr/s/hwangguem) 인터넷으로 청약 진행합니다.
- 청약신청은 1인당 1건씩 청약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하는 경우 청약신청 모두를 무효처리합니다.
- 본 오피스텔은 청약 신청시 별도의 청약예치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 청약공급일정 및 장소

구분	내 용	
청약일정	- 일시 : 2024.05.13.(월) 10:00~24.05.14.(화) 17:00 - 접수장소 :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	홈페이지(https://www.hillstate.co.kr/s/hwangguem)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추첨 : 2024.05.16.(목) 10:00 - 당첨자 발표 : 2024.05.16.(목) 12:00	견본주택 현장추첨 및 홈페이지 당첨자 발표
계약기간	- 2024.05.17.(금) 10:00~17:00	견본주택(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45)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결정방법	- 견본주택에서 공개추첨에 의해 동·호수 및 당첨자를 추첨합니다.	

※ 추첨 및 당첨자 발표는 청약신청 접수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견본주택에서는 청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는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시설 유무, 도로, 도시철도,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없음을 명확히 인지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물의 층수 등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조망권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신청자의 책임이므로 반드시 확인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당첨자는 별도 선정하지 않으며, 정당 당첨자 계약이후 미계약 호수 발생시 시행위탁자 및 시행수탁자가 수의계약으로 공급합니다.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일시 : 추첨 2024.05.16.(목) 10:00 / 당첨자 발표 2024.05.16.(목) 12:00
- 추첨 : 힐스테이트 황금역리저브 견본주택에서 공개추첨을 통해 동·호수 및 당첨자를 선정 예정입니다.
- 당첨자 발표 : 당사 홈페이지 (https://www.hillstate.co.kr/s/hwangguem)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확인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호실 발생시「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2항에 의거 사업주체가 수의계약으로 공급합니다.

III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청약 당첨자 계약기간 : 2024.05.17.(금) 10:00~17:00
- 계약체결 장소 : 힐스테이트 황금역리저브 견본주택(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45) / 문의전화 : 053-763-6111
- 계약금 납부 : 아래의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입금(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 기재)하여야 하며, 아래의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입금하여야 유효하며, 동 납부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합니다.
- 지정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서 미작성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수의 계약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1차 계약금	부산은행	692045-80-00016	교보자산신탁㈜
2차 계약금, 잔금		호실별 가상계좌 부여	

- 2차 계약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부산은행 113-2015-1257-07 예금주 : 교보자산신탁㈜)로 관리됩니다.
(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가능, 견본주택 현금수납불가)
- 실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시, 실별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지정된 분양대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 : 102동503호 홍길동 →1020503홍길동)
-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실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는 현금 및 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 등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당첨된 호수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서류 안내

구분	구 비 서 류
본인계약 체결시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1통 2.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 및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 계약 불가) 3. 주민등록등본 1통, 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4. 계약금 납입 영수증(무통장 입금증) 5. 계약자의 주민등록초본 1통 6. 수입인지(인지세)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수입인지 구입처 ①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②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인지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50%씩 균등 납부하여야 함
법인 계약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인감증명 1통(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 및 법인 등기부등본 1통, 법인인감(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통) 3. 대표이사 본인 신청시 주민등록증(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도장 지참)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 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외국인) 4. 계약금 납입 영수증(무통장 입금증) 5. 수입인지(인지세)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수입인지 구입처 ①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②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인지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50%씩 균등 납부하여야 함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 구비사항	※ 본인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직계 존,비속 포함)하며 상기 본인 계약 체결시 구비사항 이외에 아래서류 추가 제출 1.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오피스텔 계약 위임용) 1통 2.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양식은 견본주택에 비치함) 3.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인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분양광고일(2024.05.01)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에 준하는 법적 효력을 가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오피스텔은 개정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2020.02.21.이후 부동산실거래신고 거래당사자는 30일이내에 소재지 주무관청으로 공동으로 부동산거래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시 유의사항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수의 계약합니다.
- 지정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서 미작성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수의 계약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주민등록증 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으로 당첨 및 계약 체결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 취소 및 고발조치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주변의 사업계획으로 인한 건축사항,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오피스텔 배치구조 및 층, 호실별 위치 등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부득이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사정으로 부득이 해약하게 되는 경우에도 계약조항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세부 사항은 공급계약서 참조)
- 당첨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 또는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시행위탁자, 시공사 및 시행수탁자에게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분양광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오피스텔의 입주시기와 근린생활시설 입점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 기타 관리비 및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르며, 계약자는 계약체결과 동시 상기 계약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의 일부는 공동주택용 또는 오피스텔용 구분되었으며, 일부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공동으로 공유하며, 공유면적비율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릅니다. 오피스텔의 부대시설의 종류는 공동주택 부대시설보다 적게 설치되고, 공동주택 전용으로 설치된 부대시설은 오피스텔에서 사용이 불가하니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수합니다.
- 본 분양광고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합의하여 결정하는 관할법원으로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법원으로 합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등(인지세 제외)은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합니다.
- 부동산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인지(기재금액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를 계약서 작성시점에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인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 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 본 오피스텔의 공급계약서 체결과 관련된 인지세는 계약체결 시 계약자 및 사업주체가 연대하여 50%씩 균등하게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소인처리)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서 작성 시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재금액은「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2021.10.21. 발표된「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DSR규제가 강화되어 추후 잔금 대출시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별 대출한도가 축소되거나 대출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될 문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오피스텔은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없습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의3 제2항에의거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까지 2명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제한되오니, 청약 및 계약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의4 제2호에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10조 제2항제5호에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위반행위 관련 계약취소 및 벌칙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거나 전매제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에 위반되는 행위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공급금액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 분양받은 자는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 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준공예정일 : 2024년 11월 예정

■ 입주예정일 안내
- 입주예정일 : 2024년 12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자연재해나 기상이변(장마, 폭우, 폭설 등), 전염병 발생, 전쟁, 내란,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또는 문화재출토, 행정명령, 민원, 법원의 공사중지결정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예정된 공사일정 및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사업주체,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는 이를 계약자에게 통보키로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보상금 지급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지 아니하여 계약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동파, 결로, 분실, 도난, 파손 등)는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관계자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분양대금을 실 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셔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입주 안내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 계약자는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납부하여야 합니다.

IV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확인 및 명확히 숙지하시기 바람

■ 단지 내부여건
1. 본 사업은 건축허가시 최고 층수는 38층이며 오피스텔 호실 구성은 102동 지상 8층에서 22층까지입니다.
2. 본 단지는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계획된 복합시설로서 오피스텔의 주차구획 및 차량출입구는 아파트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3. 부지 내/외부 공개공지, 옥상에 설치하는 기계설비 및 건물형태, 위치 등에 의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오피스텔의 분양을 위해 제작된 인쇄홍보물 등에는 각종 이미지(투시도, 조감도 등) 및 옥상에 기계설비(탈취기, 송풍기) 표현이 없으나 추후 공사완료시에는 설치됩니다.
5. 배치상 주차장 ELEV 및 ELEV 인접호실,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및 쓰레기수거장, 실외기 설치공간 인접실에는 냄새, 소음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6. 도로 인접 및 주변부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용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8.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9.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위치 및 우·오수배관의 위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단지 내 각종 인입(상·하수도, 오수, 도시가스, 전기 등)계획은 인·허가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11. 단지 내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지역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 개소 등 세부계획은 관련기관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2.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는 계약 후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신고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3. 관할 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이나 동표시에 관한 계획,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오피스텔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색채 및 조경자문, 현장여건, 입면차별화 등에 따라 단지 내 주동 및 근린생활시설 또는 옥탑, 지붕, 측벽, 동출입구, 부대시설입면 등 각종 시설물의 디자인이나 색채, 측벽 로고의 위치, 조경, 세부식재 계획, 야간조명, 옥상, 조형구조물 등이 변경,수정될 수 있으나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14. 경관조명 등 단지 공용부위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 및 경관조명, 단지홍보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운영과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15. 대지경계 및 면적은 준공시의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대지지분의 변경 및 대지경계선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하여야 합니다.
16. 기계실, 발전기실 및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지상에 노출된 환기시설물은 건축물 특성상 필요시설로 향후 환경개선을 위하여 위치 및 개소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17. 주차장, 기계/전기실 등 시설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18. 석공사에 쓰이는 사용자재가 천연석재일 경우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VEIN)와 실제 시공된 제품의 색상 및 무늬는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이는 천연석자재의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자재 자체의 특성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합니다.
19. 저층부는 호실별로 가로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각 실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1. 단지 출입구, 근린생활시설 등의 단지 내부 시설물에 의하여 특정 실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되거나, 지상 또는 옥상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열기에 의해 사생활권이 침해되거나, 조명효과에 의해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22. 근린생활시설 주방 배기를 위한 배기덕트 및 환기시설이 호실 인근에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냄새, 진동 발생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23. 단지 외부의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건물에 의하여 특정실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조명효과에 의해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24.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도로와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25. 본 오피스텔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시공사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계약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26.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처리시 "계약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각 실 대지면적이 소수점이하 변경에 대해서는 대지면적 정산처리를 하지 않음)
27. 단지 내 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구할 수 없으며(오피스텔과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아니함), 관리주체 및 주차시설 등에 대한 어떠한 권리주장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28. 공용부분인 공용계단, 홀 등은 개인적으로 전용화하여 사용이 불가합니다.
29. 재활용 보관창고, 쓰레기집적소, D/A(설비 환기구) 등의 위치, 개소, 형태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0. 오피스텔 내 공용시설(E/V, 주차장, 편의시설 등)의 경우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청약신청자" 및 "계약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31. 주출입구의 형태(평면형태, 외관형태) 및 크기는 동평면의 형상 및 진입방식, 주변 지반레벨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일부 저층실의 경우 형태에 따라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32. 단지 내 출입구, 근린생활시설 출입구, 주차장 출입구, 엘리베이터홀 등 단지 내 부대시설 등의 경우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용상 제한 또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니 이들의 위치, 규모에 대하여 필히 견본주택에 비치한 건축도서 등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3.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4. 실제 시공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율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35. 단지 일부구간의 레벨이 단지 외부의 도로 레벨보다 낮은 구간이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사항은 계약자의 책임이며 단지 외부의 도로 레벨은 관련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36. 단위실 배수구 등의 설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37. 단지외부 도시계획시설(도로,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경관녹지, 공공공지 등)은 추후 도시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제외 구간입니다.
38.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 재활용집합창고, 쓰레기집적소, 실외기 설치공간,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 로 인한 미관저해, 냄새 및 소음, 분진,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 및 조망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위치를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39. 지하 2층 주차장에 음식물쓰레기집적소가 배치되고, 지상1층에 쓰레기분리수거장이 배치되어 관련차량 출입 및 소음,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0. 지하 2층 쓰레기 집하장은 환기설비 등이 설치예정이며, 소음 및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치 등을 필히 확인 후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41.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피뢰침, 급배기 휀, 소화수조 및 기타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42. 옥상 구조물의 공법, 크기, 위치, 모양, 색상, 마감재 등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43. 공용부위의 타일 표면에 물기 발생시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44. 동 하부에 관리사무소 및 근린생활시설, 부대시설, 필로티가 설치될 계획(일부 또는 전체)이며 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5. 단지 내 방범, 보안, 안전을 위해 설치된 CCTV로 인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
46. 주동 저층부에는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 출입구가 위치하여 인접 호실은 소음피해, 냄새, 눈부심 및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7. 동하부에 설치되는 근린생활시설의 배기를 위한 배기덕트가 오피스텔 공용부의 PD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48. 오피스텔 주차장은 지하1~2층에 위치합니다.(본 단지는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계획된 복합시설로서 아파트와 주차구획은 구분이 되어 있으나, 근린생활시설과는 함께 주차공간을 사용하여 차량 출입구 및 일부 동선이 혼재될 수 있으며,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49. 엘리베이터 홀, 최상층 및 지하주차장에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50.「전기통신사업법」제69조의2 및「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51. 청약 전 옥외안테나 및 중계장치 설치 위치를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옥외안테나 설치위치 : 각 동 옥상
- 중계장치 설치위치 : 각 동 피난안전층, 해당 층 EPS/TPS실
52. 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침해가 발생되는 실이 존재하며 수분양자는 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53. 스마트폰 인증으로 공동현관 자동문 출입이 가능한 스마트폰 키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보조 출입키(카드형 RF키)는 호실당 2개가 지급됩니다.
54. 스마트폰 자동 주차위치 저장 시스템은 실별 등록된 차량을 지하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55. 스마트폰 키 및 스마트폰 자동 주차위치 저장 시스템은 스마트폰의 Bluetooth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하며, 일부 스마트폰 기기에서는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56. 공개공지는 공공에 개방되는 시설로서 입주자 임의로 휀스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없으며, 인·허가 협의에 따라 디자인, 범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7.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의 위치 및 형상은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미술작품 설치로 인해 일부 호실의 조망권, 일조권,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는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58. 단지 내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설비관련시설 등의 위치 및 면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면적이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59. 피난안전구역은 오피스텔동(102동) 23층에 설치되며, 향후 상세설계에 따라 피난 안전구역의 그릴위치 및 층고, 주변 호실 층고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0. 오피스텔 침실1에 설치되는 창호는 소방관진입창으로 사용되며, 관련법에 따라 소방관진입창임을 알 수 있도록 별도 표식이 부착됩니다. 해당창호는 향후 소방서 및 관련기관 협의 등에 따라 창호의 개소수, 적용층수, 형태, 크기, 위치, 높이, 열림방향, 사양,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1.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주동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건축물의 옥상에 인명구조공간이 설치되며, 실시설계시 위치, 크기, 높이, 재질, 구조,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2. 오피스텔 주동과 저층부 포디움(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지상주차장) 상부가 만나는 부분은 본 공사시 구조, 상품개선 등의 사유로 레벨, 마감, 디테일 등 세부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니 이점을 반드시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63. 도로와 접한 단지 내 보도는 상위법에서 정한 공공보행통로로 입주민 외에 외부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며, 입주 후 외부인이 보도를 이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64. 오피스텔 공용공간,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조경공간,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비상차량 동선 등) 등은 실시공시 대관 인·허가 과정이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호실의 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5. 소방서 협의 결과 비상차량동선 및 정차구간, 지상 및 옥상층의 에어매트 설치구간 등 위치 및 규격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에어매트 구간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는 배제되며, 소방서 점검시 사다리차 전개에 문제가 되는 경우 일부 수목에 대해선 상부 가지치기 또는 재배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66.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었으며,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째 이하 자리 처리방식 차이로 인해 전체 연면적과 호실별 계약면적의 합과는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추후 등기를 위해 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67. 견본주택 건립안과 설계도서가 상이한 점이 발생되는 경우 견본주택대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위호실 및 기타 설계변경사항이 관련 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설계변경허가를 진행하며,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68. 각 호실 전망강화형 창호에 설치된 유리난간은 이삿짐 운반시 사다리차량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하며, 이를 어기고 사다리차량을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으니 이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9. 각 호실의 분할형 입면창호는 하부의 외부창이 열리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Fix 창으로 설치되며, 거실의 전망강화형 창호는 유리난간이 설치되며, 가운데 창이 고정됩니다.
70. 단지 내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주변 및 상부에는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실 및 설비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인접 호실은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71.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모형 등에 표현된 아파트, 오피스텔 입면에는 실시공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2. 건축물의 높이가 60m 초과시에는 지면에서 건축물의 높이 5분의4가 되는 지점에 돌침형피뢰침이 설치되어 건물외벽(특정호실 앞) 미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73. 항공기 소음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74. 각종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호실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75. 일부호실의 경우 출입구 전면에 엘리베이터 홀 등이 위치하여 출입문을 열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 호실을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76.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검토 결과에 따라서 실시공 위치 및 개소가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77. 주동 배치에 따라 일부호실은 주동간격이 좁아 프라이버시, 일조, 조망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이를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78. 하이오티(카투홈 서비스 내용 포함)서비스는 현대건설 특화 시스템이며, 아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이오티 서비스의 경우 이동통신사/포털사/제휴사의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업체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 및 사용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이오티 가전기기 제어서비스는 하이오티가 연동된 IoT가전기기를 구매하고 호실 내 무선인터넷 환경이 구축된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기 제조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제한 및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서비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하이오티 서비스는 성능 개선이나 입주 시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플랫폼 운영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카투홈 서비스는 현대/기아차 19년이후 생산 모델 중 카투홈 기능이 있는 차량으로 해당차량의 커넥티드서비스(블루링크, UVO, 제네시스)에 가입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서비스는 제조사의 운영 및 요금정책에 따라 기능 및 비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제조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9. 본 건물의 명칭, 외부색채 및 마감재와 조경 계획, 외부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경관/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80. 단지 내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호실에는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81. 건물의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호실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82.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특성상 상황에 따라 일부 호실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83. 우편물 보관함 및 무인택배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84. 오피스텔 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호실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으며,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 및 덕트가 노출됩니다.
85. 일부 오피스텔 지붕 및 지상 일부구간에 경관조명, 공청TV안테나,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 등이 설치될 수 있고 상세계획(설치면적, 위치, 높이,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 최종 확정되며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86. 호실 외 공용부에 설치되는 전기, 통신관련 시설물은 사업승인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통신 단자함/전기분전반은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87. 지하주차장 및 각 동 옥탑, 지상 일부구간에는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88. 전기(스위치, 콘센트, 월패드, 분전반, 통신단자함 등) 설비마감재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9. 차량출입구 통행 개선을 위하여 차단기가 추가설치, 삭제, 위치이동 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도로폭 확대 및 보행로폭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90. 가로등, 야간 조명,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과 인접한 호실은 소음, 빛공해, 인접 주동디자인에 의한 눈부심, 사생활권 침해될 수 있습니다.
91. 전기/통신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92. 내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인증표시는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임한 감리가 승인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해체 및 부속물(디지털도어록/말발굽 등)의 임의설치/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시공사에게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93.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아파트 및 오피스텔에 각각 또는 공동으로 설치됩니다. 각각 설치된 경우 해당 시설만 이용할 수 있고, 공동사용으로 설치된 경우 그 시설의 면적비율에 대해서 허가도서상의 개요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4. 단지 내 설치되는 공개공지는 24시간 개방하여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으로써 '건축법'제43조에 따라 공지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 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가 일반인의 휴게 공간 등으로 제공됨에 따라 단지 내 입주민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95. 공공보행통로(부지외측 보도부)의 경우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이며, 별도 관리가 어려운 사항일 경우 구에 토지를 포함한 시설물 전체를 기부채납 하여야 합니다.
96. '경관조명 등 단지 공용부위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 및 경관조명, 단지홍보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운영과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97. 옥탑 및 지붕에는 경관조명, 항공장애등, 안테나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 최종 확정되며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98. 옥외보안등 및 지하, 지상층 CCTV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기능과 감시 범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99. 기계/전기실 등은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고,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급배기용 DA가 지상에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시설과 인접한 호실은 미관저해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0. 허가도서 기준으로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로 시공예정이나,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1. 단지 주차장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며, 각 주동 공용홀로부터 접근의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2. 공용부 등에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되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됩니다.
103.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한전패드 위치 등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4. 엘리베이터에 면하거나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 운행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홀의 형태는 동별, 호수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5. 단지 내 CCTV와 주차장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의 방범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동의 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106. 본 건물의 발전기실에는 비상발전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점검 등으로 인한 기기 작동 시 소음 및 진동 등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107. 무인택배함은 각 실별 접근 거리가 상이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8.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가스배관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09. 각종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 및 피트층을 공동 사용하며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110. 오피스텔 계약면적 외의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111. 단지 이미지컷 및 전시모형상의 공동주택 부분은 전 세대 발코니확장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112. 엘리베이터 홀 및 계단실은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113. 101동 옥상에는 정화조 배기를 위한 배기탑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인해 인접한 호실에 소음, 냄새,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본 공사시 정화조 배기탑의 세부계획 (위치, 크기, 높이, 환기방식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4. 지상7층 포디움 상부(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 커뮤니티 지붕상부)는 각 호실에서 접근 및 사용할 수 없고, 관리자가 출입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사생활침해, 소음 등 생활권 침해가 발행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5. 실 시공시 연돌효과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공용부 창호의 설치 위치, 개소, 크기, 높이, 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6. 이삿짐 차량은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없고, 사다리 차량을 이용할 수 없어, 지상에 주차한 후 엘리베이터로 이삿짐을 운반하여야 하니, 반드시 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117. 진출입부(보행자출입구)에 이동식 볼라드가 설치될 수 있으며, 소방차, 통학차량 및 기타 서비스 차량의 이용 시, 별도의 출입 관리가 필요합니다.
118. 단지 내 별도 분양시설인 근린생활시설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설비시설 및 장식물 등이 추가, 변경되며 이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 및 호실은 조망, 일조, 소음, 진동 등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9. 단지 내 부대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의 주변 및 상부에는 각 시설의 실외기실, 냉각탑 및 공조실 등 설비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와 인접한 호실은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비시설(냉각탑, 공조기, 배기팬 등)의 위치, 크기, 범위, 개소수 등은 추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20. 방재실은 아파트 및 오피스텔 통합방재실 1개소로 통신설비 시스템의 일원화로 통합관리되는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121. 주차장 램프 진출입로에 설치되는 출차경광등은 최소 50dB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2. 일부 호실은 경관 조명에 의한 빛 공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3. 전기/통신,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24. 대지 인접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 호실에는 옥외보안등, 기타 보안시설 등에 의한 빛 공해 및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125. 단지내 한전패드 스위치가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관련기관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26. 옥상에 설치되는 시설물(옥상장식물, 구조공간, 설비시설물 등)의 위치,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27. 당해 건물 측면 및 옥상에 항공장애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빛 공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8. 101동 공용홀(복도)에 인접하여 벽체 외측으로 소방관 수직이동을 위한 철골계단이 설치되며, 비상시에만 사용되고 평상시 접근이 불가합니다. 102동 일부세대에서는 철골계단을 조망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해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외부여건
1. 사업준공 이전 및 입주 후 인접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으며, 인접 호실은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단지주변 도로에 인접한 주동의 일부 호실의 경우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대지주위의 도로에 대한 사항은 도시계획상 상위계획 및 최종측량 성과도에 따라 도로폭, 경사도, 레벨계획, 바닥마감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단지 경계부와 단지 주출입구에는 자동차 도로가 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4. 향후 소음영향평가 실시 후 결과에 따라 방음벽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5. 인접 지역의 개발계획 등은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단지 동측 동대구로가 인접하고 있고 인근 다수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향후 소음, 진동, 분진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본 단지 동측에 3호선 도시철도가 위치하여 소음, 야간눈부심, 진동, 분진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에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니다.
8. 청수로, 동대구로를 포함한 단지 주변에 도로가 인접함에 따라 소음, 진동, 조망의 영향이 있을수 있음을 충분히 양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9. 향후 개발될 수도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공사중 그리고 공사 완료후 소음, 매연, 먼지,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0. 가까운 동간 거리로 인해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 (주변현황 포함) 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지상돌출물, 지상 쓰레기 관련시설, 단지 내 도로 등) 및 단지주변 현황 (인접 APT단지, 인접 주택단지 (상가주택 포함), 주변상가, 종교시설 (교회 등), 학교, 공원, 철도, 단지외부도로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양 후 단지 주변의 개발 및 재건축 등으로 인한 주변시설 (도시계획 시설 포함) 이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위호실 및 마감재
1. 계약 체결시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2. 오피스텔 입주 후 하자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상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적용합니다.
3.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및 색채는 실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견본주택에 비치된 건축허가 도서를 참고하시어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5. 하기 사항에 따라 일조·조망·사생활 침해, 소음·빛공해·분진·냄새·진동 발생 등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기계실 / 전기실 / 발전기실 / 제연FAN / 정화조 / 정화조 배기탑 / 우수조 / 송풍기 / 주방 배기 / 정화조 배기 등에 인접한 호실의 소음, 냄새, 진동 발생 및 돌출물/시설물(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 등으로 인한 일조, 빛공해, 조망간섭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E/V 운행에 따른 인접 실 소음, 진동 등 발생으로 인한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일부실은 실내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마감자재 테스트 부착 등의 실로 사용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사용 이후 원상복구를 하고 "계약자"에게 인도함을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7. 각종 인쇄홍보물 등에 표현된 가구소품, 운동기구,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8.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 스피커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 시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그 설치 위치가 결정됩니다.
9.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냉난방겸용 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시설이며, 본 시공시 냉방전용 시스템에어컨이 제공됩니다.
10. 난방은 개별난방 방식으로 보일러가 제공되며,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구의 크기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실내 환기성능을 고려하여 위치 및 개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12. 마감재의 사양은 주택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13. 견본주택에 설치된 수전류, 욕실 마감자재(양변기, 세면기, 휴지걸이, 수건걸이 등), 욕실FAN 등의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4. 외부창호, 프레임사이즈, 유리색상, 두께 및 제품사양 등은 공사시 변경될 수 있으며 실별, 층별, 위치별로 각종 사양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15. 외부창호는 분양가 포함이며, 향후 재질, 사양 및 디자인을 포함한 제반사항이 견본주택에 제시된 형태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16.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 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7. 일부 실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18. 계약실이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감도, 실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부분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합니다.
19.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옥외 탈출형 대피시설이 설치되며, 본 공사시 옥외 탈출형 대피시설의 사양, 바닥 및 벽체 마감, 마감의 광택, 레벨, 하부 턱 및 배수구 설치여부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 옥외 탈출형 대피시설에 설치되는 타공판 난간의 형태, 재질, 색상, 높이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일부 호실은 소방관련 협의 및 소방대 진입 계획 등에 따라 타공판의 일부 구간이 열리는 방식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1. 실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2. 창호의 문 열림 방향, 날개벽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3.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24. 수전, 우·오수 선홈통, 드레인, 배수구 등의 위치는 견본주택 기준이며, 현장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25. 견본주택에 설치된 내/외부창호는 본 공사시 업체, 규격,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가구류(침대, 소파 등), 침장 및 커튼류, 인테리어 소품류(사진, 액자, 화분 등)는 연출용입니다.
26.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7. 각 실의 복도 및 홀, 부속실 등의 공간은 공용부분으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28. 저층실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형태 및 크기 등 이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9. 실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30. 욕실 천장에 급수를 위한 분배기 및 상부층 배수배관이 설치 됨에 따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천장에 설치됩니다.
31. 실시공시 실내 욕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2.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3. 입주 후 실내 환기가 부족할 경우 내/외부의 온도차이 및 습기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결로에 의한 곰팡이 발생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야 하며 특히 입주 후 첫해 겨울은 환기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욕실 샤워기 및 다량의 온수 사용 시 욕실 환기를 하셔야 하며, 욕실 환기 미비, 거실, 주방 등에 과도한 가습기 사용이나 음식물 조리 및 다량의 화분(실내 또는 다용도실)은 결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시기 바라며 환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4. 욕실 거울의 경우 보호페인트가 입혀져 있더라도, 자재특성상 산성, 알칼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며,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바, 욕실 환기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책임지셔야 합니다.
35. 단열공사 외 환기불량, 사용상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로에 대해서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36. 실내습도 및 사용자의 생활 환경이나 습관 등 생활여건에 따라 유리창 표면 등 창호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37. 계약자는 각 실 외부 창호에 무리하게 힘을 가하거나 전입, 전출, 이사 시 이삿짐 장비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하고, 가급적 이삿짐 등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이사 중 파손시 원상복구)
38. 호실의 기타 실 내부에 전기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이 개별(또는 통합)으로 설치되며, 위치 및 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39. 호실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 환기장비가 실외기실/다용도실 등 천장에 노출 설치되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작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0.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자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 이후에 성능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공자에게 품질 또는 성능미달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입주 이후 '수분양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저하 발생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41. 주방에 렌지후드 환기덕트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일부 가구의 깊이가 줄어들 수 있으며,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42. 주방거치대 후면에 주방거치대 전원 및 통신단자용 통합콘센트가 주방 타일면에 노출 설치되며, 전원선 및 통신케이블이 노출됩니다.
43. 설비 배관상의 이유로 커튼박스 크기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44. 다용도실에는 상부 배수배관이 천장 내 설치될 수 있으며,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5. 수전이 설치되는 다용도실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46. 실외기실 갤러리(루버)창 프레임 및 갤러리의 색상은 외부 색채 디자인에 따라 호실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47.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소품 등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제외 품목입니다.
48.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특허권 등 부득이한 경우 및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본 공사 및 하자보수 시 동등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49.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타일류, 천연가공석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단차, 코너, 마감재 접합부, 패턴 등은 실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50. 주방가구 및 붙박이가구의 후면 및 바닥, 벽체 등은 마감재 시공범위에서 제외됩니다.
51. 철제 방화문(현관문 등)은 방화성능을 고려하여 본 공사시 하부씰, 상하좌우 프레임 형상 및 재질이 변경됩니다.
52. 주방씽크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씽크장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됩니다.
53. 본 공사시 각종 도어 및 창호류의 사양(유리사양, 창틀 디자인, 손잡이, 창호크기, 루버형태, 재질, 색상, 제조사, 열림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4. 주방 상판 이음 부분이 노출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이음 부분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55. 픽쳐레일의 위치, 수량, 길이 및 사양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으며 옵션에 따라 위치,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6. 단위호실 주방내부 구성 및 하드웨어, 악세사리 일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7. 비상대피동선으로 견본주택 난간의 일부가 개폐되도록 설치되었습니다.
58. 욕실 내 벽체 및 바닥 타일나누기는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타일의 색상 및 패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9. 커튼박스 위치 및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에 미설치된 커튼박스 관련 본공사 시 실제 적용되는 커튼박스 부위는 계약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60. 목창호(일부 실 제외)에 손끼임 방지 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며,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61. 욕실 문턱 높이는 물넘침 방지가 목적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관계가 없습니다.
62.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에는 마루, 타일,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63. 단위호실의 내부 단차부위(욕실, 현관)는 변경될 수 있으며, 출입문 개폐 시 신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4. 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5. 욕실 벽, 바닥 타일의 줄눈 위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줄눈 및 타일 사이즈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6. 본 공사시 코킹 시공 부위는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욕실 천장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67. 단위호실 가구 구성 및 하드웨어, 악세사리가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8. 관련법규에 따라 거실에는 배연창이 설치되며, 실시공 시 배연창의 크기, 위치, 세부계획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69. 관련법규에 따라 소방대 진입창이 설치되며, 소방서 협의 등에 따라 소방대 진입창의 위치, 크기, 열림방향, 창호의 유리, 디자인, 프레임, 높이, 단열성능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70. 본 공사시 대피공간 바닥마감의 색상, 마감사양, 광택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71. 본 공사 커튼박스 시공 시 가구 간섭부분에 가구 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72.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조명 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콘센트, 월패드 등의 제품 사양, 수량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73. 본 공사시 각종 유리도어(슬라이딩도어 등)의 각종 디테일(프레임, 레일, 유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74. 본 공사시 실외기실 그릴창의 제조사, 재질, 사양, 크기, 디자인, 색상, 열림방향, 고정방식, 설치위치, 하부씰 디테일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75. 본 공사 커튼박스 시공 시 간섭부분의 가구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설비배관에 따라 커튼박스의 길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76. 욕실, 주방벽 타일, 거실 아트월 세라믹타일, 바닥 포세린타일의 나누기 및 패턴은 본 공사 시 다를 수 있습니다.
77. 본 공사 시 거실 아트월 세라믹타일의 패턴은 상/하부 북매치 또는 균일하게 패턴이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78. 다용도실(세탁기 설치구간)에 시스템선반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79. 본 공사 시 시스템선반의 사양, 길이, 폭,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80. 타일 및 천연가공석의 줄눈나누기,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세대단자함, 세대분전함, 배선기구, 보일러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81. 스마트 주방거치대가 설치될 경우 후면에 전원 및 통신단자용 통합콘센트가 주방 타일면에 노출 설치되며, 전원선 및 통신케이블이 노출됩니다.
82. 견본주택에 연출되어 있는 스프트라이트, 스탠드 조명 및 팬던트는 전시용으로 실시공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83.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됩니다.
84. 호실 내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장소별 색온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85. 타일 및 천연가공석의 줄눈나누기,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세대단자함, 세대분전함, 배선기구, 보일러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86. 호실별 세대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기간사업자에게 제공 요청하여야 합니다.
87. 호실 내 마감 상황(타일 및 천연가공석의 줄눈나누기, 도배와 가구 설치내용 등)과 제품의 품질수준 유지를 고려하여 월패드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88.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됩니다.
89.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호실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디자인, 사양, 갯수, 설치위치 등이 건립호실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90. 오피스텔의 현장여건,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등의 사유로 조명기구, 월패드, 분전함, 콘센트, 소방설비 및 배선기구류 등이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91. 침실, 거실, 주방의 조명스위치는 이동, 취침준비 등을 고려하여 마지막 소등되는 회로가 몇 초간 지연 후 소등되는 조명스위치가 설치됩니다.
92. 가구 보강은 "원형 매입등 φ800, 사각 매입등 800*800" 규격 이상에만 해당됩니다.
93.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94. 환기장비에는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HEPA필터가 설치되며, 필터는 연 1~2회 교체를 권장합니다. 사용정도에 따라 교체주기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95. 오피스텔 다용도실에 설치된 보일러커버의 형상 및 재질, 디테일 등은 본 공사시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96. 홈 네트워크 설비 및 대기전력 차단 시스템유지 등에 따라 미 입주시에도 일부 전기사용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분전반 차단시 홈네트워크설비, 방범 및 경보 알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97. 주방에 설치되는 전열기구(콘센트, 스위치 등)위치 및 수량은 본 공사시 주방 가구, 주방 가구 악세서리 및 가스배관 설치 위치에 따라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98. 각 호실 침실 내부에 세대분전함/세대단자함 또는 세대통합분전반이(세대분전함+세대단자함 통합형) 설치되며, 시공과정에서 위치 및 마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99.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호실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디자인, 사양, 갯수, 설치위치 등이 건립호실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100.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1. 견본주택 호실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 보안용으로 본 공사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102. 단위호실 내 세대분전함, 세대단자함, 세대통합분전함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월패드 및 배선기구류의 제품사양, 설치방향, 개소, 디자인 및 위치는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3. 주방에 설치되는 전열기구(콘센트, 스위치 등)위치 및 수량은 본 공사시 주방 가구, 쿡탑, 개수대, 악세서리 등 설치 위치에 따라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104. 주방스마트거치대의 전원은 해당기기 후면에 설치된 콘센트를 사용합니다.
105. 각 실에 설치되는 일부창호는 소방대진입창으로 사용되어 유리에 별도 표식이 부착되며, 해당창호는 향후 소방서 및 관련기관 협의 등에 따라 창호의 개소수, 적용층수, 형태, 크기, 위치, 높이, 열림방향, 사양, 유리,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6. 사업주체"는 공사 시행 중 "계약자"의 위 표시재산을 품질관리 등을 위한 샘플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샘플하우스 사용 이후 원상복구를 하고 "계약자"에게 인도함을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107. 입주 후 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PIT 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108. 각 호실 거실 및 일부호실 침실 등의 분할형 이중창호에 설치된 중간바는 이삿짐 운반시 사다리차량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하며, 이를 어기고, 사다리차량을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으니 이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109. 각 호실의 분할형 입면창호는 하부의 외부창이 열리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Fix 창으로 설치됩니다.
110. 각 호실의 욕실은 바닥난방이 설치됩니다.(양변기/세면기 하부, 샤워부스 내부 및 욕조 하부 제외)
111. 근린생활시설 주방 배기 정화조 배기를 위한 배기덕트 및 환기시설이 호실 인근에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냄새, 진동 발생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다.
112. 욕실 천정 내부, 다용도실, 실외기실 벽체 및 주방가구 옆면, 뒷면 등에 PD 내부를 점검하기 위한 내시경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점검구 마감을 위한 덮개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113. 인덕션이 시공됨에 따라 가스 쿡탑 사용이 제한됩니다. 추후 가스 쿡탑 이용 시, 가구 수정공사가 필요하며 이는 입주자 분임을 인지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114. 본 공사시 제품개발에 따라 기능이나 디자인, 색상, 설치위치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동등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15. 신발장 또는 창고, 기타 호실 내부에 세대분전함 및 세대단자함이 통합 또는 개별로 설치되며, 위치 및 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6. 냉방전용 시스템에어컨 장비와 배관은 기본 공급되고 장비로부터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냉매매립배관 미제공)
117. 거실과 침실1(안방)에 설치되는 유리난간 일체형 창호의 가운데 창은 고정창으로 시공되며, 침실1(안방)에 설치되는 유리난간 일체형 창호의 유리난간 반대편 창호는 고정창으로 시공됩니다. 본공사 시 창호 손잡이 및 난간, 부속품의 마감재, 색상, 위치, 두께, 높이, 규격, 열림창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8. 국기게양대는 세대별로 설치되지 않으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부대복리시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및 기계전기실은 아파트 및 오피스텔에 각각 또는 공동으로 설치됩니다. 각각 설치된 경우 해당 시설만 이용할 수 있고, 공동사용으로 설치된 경우 그 시설의 면적비율에 대해서 허가도서상의 개요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
1.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계약시 체결된 건물의 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 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2. 사업주체는 위 목적물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준공하고 목적물을 인도합니다.
3. 계약자는 인쇄홍보물 이외의 홍보자료와 주변의 구두 과대선전 등을 근거로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장여건 또는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준공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호실 내·외, 공용부분 전시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전·후 최종 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또한 건축허가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본 오피스텔의 공급가격은 각 층별, 향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공급금액의 상이하오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7. 계약자 또는 그 사용자가 무단 구조변경 등 본 계약서 내용 및 기타 입주 시 고지된 입주자 유의사항을 위반 또는 해태함으로 인하여 계약자 또는 그 사용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 및 하자보수책임 및 제조물책임법상의 책임을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8. 본 오피스텔 입주자 분양광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 및 영상물 등은 사전 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내 전시타입 또한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구, 내부 마감재, 가전제품, 인테리어소품 등이 분양가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실제 시공되지 않거나 실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그 형태 또는 색상이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고, 건축허가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실제 시공은 인·허가된 최종 건축허가(변경)도서 기준으로 합니다.
9. 각종 광고 및 홍보물(견본주택, 카탈로그,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에 표시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지하철,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공공용지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10.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체결시 유의 바랍니다.
11. 각종 인쇄물 내 단지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각종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12.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13. 입주자사전점검일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14.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는 준공 후 입주자의 원활한 입주 업무 지원, 신속한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오피스텔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입주업무는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최대 5개월, 하자보수 업무는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최대 15개월)동안 입주지원센터(가칭) 및 현장A/S센터(가칭)로 사용하며,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게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비용(임대료 등) 및 시설 이전·축소 등을 요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합니다.
15. 오피스텔의 특성상 층간, 호실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6. 설계와 관련한 내부여건사항에 대하여 숙지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17. 본 오피스텔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18. 본 분양광고상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건축법」및「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19. 단지 내 조경시설 및 식재의 종류, 수량, 식재위치는 인·허가청의 요청 혹은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한 설계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 포장의 패턴 재질 등은 인·허가청의 요청 혹은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한 설계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1. 단지 내외 부지레벨 등은 실시공시 공사 및 주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2. 단지 주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문주, 조경(식재, 시설물)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 호실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해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23.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호실은 소음발생 및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4. 본 단지는 일반상업지역에 건립되는 주거복합 건축물로 건축법상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호실별, 위치별로 일조권 및 조망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5. 계약호실이 속한 동의 위치, 층, 향에 따라 일조량에 차이가 날 수 있고, 일부 호실은 하루 종일 일조가 되지 않는 영구음영 호실이 생길 수 있는 점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26. 단지명, 단지내 시설명칭, 동·호수의 표기, 단지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은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지자체 승인 관련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7. 인근학교 학생배치와 관련하여 유치원은 5권역 내 분산배치 가능하며 초등학교는 황금초등학교 배치 가능, 중학생은 2학교군 내 분산 배치 가능, 고등학생은 단일학군(광역배정) 및 일반학군(1학군)내 분산 배치 가능합니다.
28. 당해 지구 내 교육시설 등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학생수용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학생배치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운영과, 053-231-0705)

V 기타사항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분	회사명	감리금액(부가세 포함)	비 고
건축감리	㈜건축사사무소 도시이십일	₩1,650,000,000	
전기감리	㈜신덕엔지니어링	₩209,000,000	
정보통신·소방 감리	㈜신덕엔지니어링	₩627,000,000	

■ 관리형토지신탁 관련 사항
- 본 공급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신탁법」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다은비, 시행수탁자 교보자산신탁㈜ 및 시공사 현대건설㈜, 대출금융기관인 우선수익자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실질적 사업주체는 ㈜다은비이며,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위 분양 건축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은 "㈜다은비"가 "교보자산신탁㈜"에게 사업부지 및 시행을 신탁하여 진행하는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으로, 실질적인 분양사업자는 "㈜다은비"임을 "분양계약자"는 인지합니다.
- 본 계약의 각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보자산신탁㈜"는 관련 법률 및 본 분양계약상 매도인의 제반 의무(분양대금 반환, 지체상금 배상, 하자보수책임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를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부담하며, 이를 넘는 책임은 "㈜다은비"가 부담합니다.
- "㈜다은비"의 신탁계약상 위탁자의 지위가 양도되는 경우 "분양계약자"는 그 사실을 통지받은 시점에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에게 위 분양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과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중 빠른 시점에, 본 계약상 매도인의 지위 및 수탁자가 부담하는 제반 권리의무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다은비(지위의 승계가 있을 경우 그 승계인)"에게 면책적,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분양계약자"는 이에 동의합니다.
-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 기타 사업비용 등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관리형토지신탁 내용은 본 공고 모든 내용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사업관계자 명칭

구 분	시행위탁자	분양사업자(매도인 겸 시행수탁자)	시공회사	분양대행사
상호	㈜다은비	교보자산신탁㈜	현대건설㈜	㈜빌리프인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분포로 115, 비동 310호(용호동, 힐탑탑플레이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7층 (서초동, 교보강남타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계동, 현대빌딩)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116길 5, 2층 (삼성동, 경호빌딩)
법인등록번호	180111-0368886	110111-1617434	110111-0007909	110111-6431136

■ 홈페이지 : https://www.hillstate.co.kr/s/hwangguem
■ 견본주택 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45
■ 분양문의 : 053-763-6111

※ 본 견본주택은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분양광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및 이 공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광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견본주택 및 현장 위치도

견본주택 :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844
현 장 : 1단지_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891-1번지 일원
2단지_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862-5번지 일원

힐스테이트 황금역리저브

053.763.6111

힐스테이트 황금역리저브 1단지_ 아파트 [총 152세대], 오피스텔 [총 30실]

힐스테이트 황금역리저브 2단지_ 아파트 [총 185세대], 오피스텔 [총 44실]

시행 KYOBO 교보자산신탁 위탁 (주)다은비 · (주)대한홀딩스 시공 현대건설